

영등포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학영 의원 발의】



2019. 9.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152호로 2019년 9월 19일 김화영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전문 개정(안 제1조)

나.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여 지급 대상 확대(안 제3조)

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범위를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로 구체화(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9. 10. ~ 9. 16.) : 의견 있음

※ 자치행정과 검토의견

-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화 됨에 따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위 조례 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7조(장학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적용대상자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의 경우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도록 조례개정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회신한 사례가 있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인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여 지급토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검토결과,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의 무상의무교육 확대실시 (2019년 하반기 고3, 2020년 고2, 2021년 고1 예정)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로 확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재정비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범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해 집행하는 사항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학생 자녀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용산구, 성동구,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12개 자치단체가 있음.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